

현 장 설 명 서

◆ 공사명 : 황조마을 연도변조사 용역

2018년 11월 일

대림산업 주식회사
영암-해남진입도로1공구 현장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1공구) 중 황조마을 연도변조사 용역
- 2) 공사기간 :
- 3) 현장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 4) 공사주요사항 : 황조마을 조사대상 시설물 70개소(내부,외부,공용부) 균열 등 결함조사 및 변위 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 균열, 기울기, 누수, 소음, 진동 측정
 - 성과품 작성(보고서, 외관조사망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CD편집)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 1) 현장설명 일시 : 2018. 11. 08. 14:00
- 2) 현장설명 장소 : 현장사무실
- 3) 설 명 자 : 김 형 석 차장
- 4) 입 찰 일 시 : 2018. 11. 15. 15:00
- 5) 입찰서 제출장소 : 현장
- 6) 입 찰 방 법 : 경쟁입찰
- 7) 공 사 범 위 :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기된 사항
- 8) 하 자 조 건 : 발주처 계약조건과 동일
- 9) 계 약 방 법 : 총액 및 단가계약
- 10) 입찰시 제출서류 : 내역서 및 현설시 제출요구서류
- 11) 낙찰후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 확약서등 현장 요구서류
- 12) 견적관련 문의처 : 김형석 차장(070-4660-5729, 010-2345-1052)

3. 견적서 작성 기준

- 1) 각 입찰 참여사는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근거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갑"은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며, "갑"의 서면통보가 없는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 3) 내역서는 첨부양식의 항목으로만 구성되며, 내역의 임의수정 또는 당사에서 정해진 요율과 상이하게 투찰시 낙찰 배제 처리한다.
- 4) 견적서는 제시된 도면, 공사 시공방법, 현장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기타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누락 ITEM이 없도록 하며 책임시공 조건이다.
- 5) 단가산정에 있어 식단가 또는 "갑"이 산출근거 제출을 지정한 단가의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낙찰자 선정기준은 당사 하도급 관리 규정에 의한다.

7) 공사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내역에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8) 견적/시공 : 설계변경 지시공문 외에 견적 시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 시 청구할 수 없으며 견적 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시 배포된 도면을 기준으로 당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자재구매, 조달 및 시공행위 일체를 책임시공 해야 한다.

4. 업체 선정

1) 입찰업체중 예가 이하 최저가 견적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가 견적금액이 복수일 경우 동일 견적금액 업체만으로 최종입찰(서면 또는 전자문서)하여 결정한다.

2) 입찰금액이 모두 예가를 초과할 경우 재입찰을 시행한다.

3) "갑"은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도, 타절 등 공사수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방지하고, 견실시공 및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갑"의 규정에 의해 저가하도급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저가하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다.

4) 저가하도급 심의를 거쳐 탈락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다.

5) 낙찰된 업체의 견적금액은 당사에서 심의를 실시하며, 낙찰업체 견적단가가 타사 견적단가 및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거나 높아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전체 낙찰금액과 변동 없이 상호 합의하여 견적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참석자 명부

업체명 , 대표자, 참석자, 날인, 연락처, Email주소를 명기한다.

[illegible]

현장설명서

6. 계약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기본원칙

공사입찰 및 견적시 견적단가는 입찰일, 입찰시점의 물가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대림산업(주)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 업체를 "을"이라 칭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적용

(2) 공사시공

① "을"은 공사시방서(발주처시방서포함)에 언급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누락되어 있는 (혹은 설계도면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공사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는)사항들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모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② "을"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교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갑"의 서면교부 이전에는 해당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갑"의 서면교부 이전에 "을"이 수행한 공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③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공사의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의 시공에 따른 하도급 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여부 등을 결정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없이 "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④ 공사수행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을"은 "갑"과 공사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계획 공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이 사실을 서면통보하고 지연공정 만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서면통보를 받은 즉시 지연공정 만회계획을 제출하고 지연공정 만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지연 만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공사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 작업 및 조기작업 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반영가능하다.

⑦ "을"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이 제공한 작업일보 양식에 의하여 매일 "갑"에게 작업현황을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공측량, 검측 및 제반 이행사항은 "갑"의 확인 및 승인 하에 "을"이 시행한다. 또한 "을"은 "갑"의 품질관리계획 서상의 시험기기 검교정 주기에 맞춰 검교정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검교정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4,7조 적용

(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① 설계도서는 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조건, 공사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특수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비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서류가 배치되어 이견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② (1)하도급계약서 (2)공사하도급계약 특수조건 (3)공사하도급계약조건 (4)현장설명서 (5)설계도면 (6)특수시방서 (7)일반시방서 (8)공사비내역서 (9)기타서류로 정하며, 발주처 계약서류중 (5)번이하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명기되었을 경우 발주처 조건에 따른다.

(4)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근로시간 단축 도입으로 인한 법정공휴일 제도 변경에 따른 증액은 없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5조 적용

(5) 인·허가 수속 및 민원의 처리

①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을"은 대관청 관계, 허가, 인가, 등록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단, "갑"이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허가나 인가 등에 대하여는 "을"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하

② "을"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할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금액의 변경

현장설명서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을 경우, 하도급 계약단가가 하도급입찰 당시의 물가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단가임을 감안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도급조정을 산출근거에 의하여, 하도급입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하도급적용 물가변동률($K2=K-K1$)을 적용한다. 이때 하도급단가를 증액 변경한 공종은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K : 총 물가변동률, K1 : 하도급입찰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 K2 : 하도급적용 물가변동률
②	"을"은 현장설명서 "갑"이 제시한 설계도면,공사시방서,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량누락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 증감분은 발주처의 도급설계 변경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수 있다. 단, (2)공사시공 ③,⑥항과 같이 "갑"이 사전에 서면 확인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복합1식단가 및 일위대가 작성이 필요하다고 "갑"이 요구한 항목은 견적서 제출시 산출근거를 필히 첨부 하여야 하며, 일위대가표 및 내역서에는 자재의 활증을 포함하고 명기치 않았더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공사(공사용 진입도로, 접근시설 및 작업발판 등)는 필요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을"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갑"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반영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⑤	규격변경, 수량증감, 신규항목 발생시의 단가변경은 7.계약특수조건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9조 적용
(7)	계약일의 조정 계약일은 "갑"의 발주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8)	부적합한 공사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9조 적용
(9)	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현장여건에 따라 "갑"의 공사우선순위 판단에 따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인원 및 장비 철수, 자재에 대한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상기 비용이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을"은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그 근거자료를 기초로 "을"과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7조 적용
(10)	선 급 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선급금을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갑"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되, "을"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3조 적용
(11)	하자 담보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5조 적용
(12)	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증규모 : 공사금액(VAT포함)의 10%를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① 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의 제출은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 보증서인 경우에는 원본을 외주팀에 제출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서의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공사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은행권 보증시 보증기간 종료일은 60일 가산해야 한다.

현장설명서

③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④	제①항 및 제②항, 제③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의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소정 기일 내에 위 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이 계약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에서 "을"의 계약미이행율(<계약금액에서 "을"이 발행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2조 적용
(13)	인 지 세
①	인지세 개정사항 및 부담방식 (1)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모든 (하)도급계약 전자문서에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한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적용 (2) 인지세 납세의무는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3) 낙찰업체(이하 "을")는 (하)도급계약시 인지세를 선부담 후 당사(이하 "갑")로부터 인지세금액의 50%를 정산 받는 방식으로 균등하게 연대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인지세 납부는 (하)도급계약 전자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8조 1항 적용
②	전자수입인지 첨부방법 (1) "을"은 Home-tax(국세정보통신망,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갑"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Home-tax(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와 "갑"과 체결한 계약번호가 기재된 "인지세접수상세내역"출력화면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대림산업 어깨동무(http://partner.daelim.co.kr)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출력물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3)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갑"과 체결한 계약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한 전자수입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인지세 정산방법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4항 적용 (2) "을"의 인지세미납부, 과소납부, 지연납부 등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을"이 100% 부담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인지를 재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4항 적용 (4)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은 "갑"이 외주시스템(http://srms.daelim.co.kr/)에서 작성·기록한다. (5)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4)	계약의 변경
①	"을"의 귀책으로 인해 후속공정이 지연될 경우 "갑"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6조 적용

현장설명서

②	"을"은 공사입찰시 독과점(특허/신기술)공사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을"이 보유 또는 사용허약권을 보유하지 않아, 공급 및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찰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후 계약내역에 특허공정 또는 신기술항목이 발견된 경우 "갑"은 해당공종을 조정, 분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예정공정표기준)에 공사를 완성할수 없음이 인정될때. 2) "을"의 귀책으로 후속공정(예정공정표기준)이 지연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 3) "갑"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3회 이상일 경우. 4) "을"의 부실공사로 원활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5) "을"의 재하도급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공사이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7)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거래처대금 및 임금 이 3개월(회) 이상 체불되는 경우. 2.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취소 및 하도급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 부도발생으로 당좌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부도발생에도 불구하고 "을"의 해당공사이행과 타공정에 영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계약을 지속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을"은 계약이행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대비 200% 증액된 증권 또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②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12)계약이행보증 ⑤항과 같이 "갑"에게 귀속된다. ③ "갑"은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②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해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을"의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 통지를 2회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갑"은 기발송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근거로 "을"에 의해 완성된 기성물량에 의거하여 내역정산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8조 적용
(16)	입찰불참 및 견적불성실에 대한 제재사항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여업체에 대하여 입찰정지등을 포함한 일정제재를 할 수 있다. ① 입찰금액이나 조건을 불성실하게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업체. (불성실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찰견적금액이 공사에정금액 및 타업체 평균가 대비 150%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할 경우. ③ 입찰이 불공정입찰(담합 등)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업체. ④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현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의 대내외 이미지 훼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
(17)	보험의 가입 ①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갑"이 일괄 가입한다. ② "을"은 계약과 동시에 아래 각호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견적시 보험항목별로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서

1.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요여부 현장에서 판단)
3. 공사보험 (필요여부 현장에서 판단)

③ "을"이 계약과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도급사 : "대림산업(주)"으로 표기
2. 보험한도 : 1인당 2억원이상, 1사고당 2억원이상

④ "을"은 공기연장시 상기 보험기간을 공사기간까지 반드시 연장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40조 적용

(18)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6조 적용

(19) 노임,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우선변제의무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7조 적용

(20) 노임에 대한 대위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7조의 2 적용

(21)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직접지급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7조의 3 적용

(22) 부도시의 체불금의 대위변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8조 적용

(23) 보 증 서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보증서에는 "조건부 보증인수 또는 보증인수 거부"등의 제한사항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사항 예시: 위 보증서는 결합낙찰율(도급낙찰율 X 하도급낙찰율)이 50% 미만일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낙찰율을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건 없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조건없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입찰 및 하도급계약은 무효처리되며, "을"은 공사 포기각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서는 장기계속공사의 보증책임 제한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 후, 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상세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

(1) 일반사항

①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 기타모든 거래처에게 그 거래대금을 성실히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낙찰업체는 ㈜나이스디앤비가 운영하는 대림 대금지불시스템(daelim.nomubi.com) 및 별도의 약정된 금융계좌(이하 "노무비닷컴")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령하고,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① 낙찰업체는 낙찰통보 후 5일(영업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수령 및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나이스디앤비가 운영하는 대금지불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하며, 당사로부터 안내된 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과 B2B 약정을 하여야 하고 B2B 약정을 체결한 동일한 은행에서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를 신규개설한다.

현장설명서

- ② 당사와의 B2B 결제계좌는 반드시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로 변경해야 하며, B2B대출(할인) 혹은 만기 시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로 현금화된다.
- ③ B2B결제계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당사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서 발급한 결제계좌 변경승인 공문을 지참하여 해당은행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 ④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 개설 후 하도급 기성금을 신청하며, 하도급 기성금 신청후 대금지불시스템에 각각의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기타 거래처의 계좌번호, 거래대금등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입력하고, 당사의 현장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등의 거래대금을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를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 (3) 기 타
- ①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집행할 경우 이체운영수수료(건당 500원, VAT별도)가 발생 된다.
- ② 대금지불시스템 이용 안내서 : 낙찰업체 제공예정.
- ③ 대금지불시스템 이용문의 : ㈜나이스디앤비 상담센터 02-2122-2598, 2532

다. 자재, 장비 및 시설물 관리

- (1) 공사 자재의 검사
- 모든 자재는 K.S 허가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허가 표시품이 없을 시는 형식 승인품 중 최상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견본품으로 제출된 자재비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공사자재의 검사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을"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
- "을"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 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④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수행했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 지시할 수 있는 "갑"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및 각종 규격 증명서를 제출하며, 발주처에 자재공급권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경우 "을"은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자재공급권 승인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6조 적용
- (2) 공사용 기자재의 관리
- ① 지급자재 및 "을"의 모든 구입자재는 반입시 "갑"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 보관 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하차, 소운반 및 적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공사도중 자재 정리 정돈은 "갑"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의 분실, 파손, 망실 등으로 자재 부족 시 "을"이 책임지고 보충하여야 한다.
- ③ 반입된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갑"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 ④ 모든 반입자재의 하차, 운반 및 작업 후 청소와 작업부산물정리, 운반, 반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⑤ 공사시행 전, 후의 현장청소 및 자재정리를 "갑"이 지시하는 대로 "을"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갑"이 시행 후 "을"의 기성금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다.
- ⑥ 공사용 기자재의 야적장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을"의 비용으로 조성하고,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7조 적용
- (3) 공사용 시설 및 장비 관리

현장설명서

- ① "을"은 계약상 요구되는 공사를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 ②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 및 운반비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 보험가입증명원 (건설기계종합보험 또는 중장비안전보험)
 - ◆ 운전자면허증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장비등록증 및 검사증
- ③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건설장비는 추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불응시 즉시 현장에서 방출되며 "갑"이 필요시 임의로 설치 후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 ④ "을"은 "을"이 사용할 시설물 또는 가설물의 설치위치, 외관형태, 표식(현판), 사무실 내 해당 면허증 사본부착 등이 포함된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갑"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현장의 부적당한 장비, 시설, 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해야 하며, 부적당한 항목은 개조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계약공사의 준공 및 인수 전 "갑"의 승인없이 현장의 어떠한 시설, 건설장비 및 기구도 철수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단 "을"로부터 철수 승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갑"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을"은 계약공사를 목적으로 투입된 "을"의 장비, 도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의 잉여분을 공사 완료 후 현장외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공사 도중에 철수할 "을"의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 ⑧ "을"은 공사 수행중 장비, 인원, 시공시설물, 자재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⑨ "을"은 가설방진망, 가설 방음벽,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 운영 및 철거를 내역대로 시행 하여야 하며, 내역외 추가 경비 투입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반영가능하다.

라. 안전관리

- (1) "을"은 "갑"의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의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을"은 공사 착공 전 당해 공사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대리인계를 "갑"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3) "을"은 안전관리 및 시공 각 공종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4) "을"은 공사 착공 전 유해, 위험 공종에 대하여 공법, 안전성 등을 검토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 (5) "을"은 작업 전 안전용 도구를 확보하여 작업원에게 지급하고 표준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갑"의 판단으로 안전조치가 미흡시 "갑"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 (6) 현장내 모든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불응하는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에서 방출한다.
 - (7) "을"은 별도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배치하고,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투자한다. 자격, 배치시점등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 ◎ 안전관리자 : ? 명 (유관부서(토목SQ팀)와 협의 후 결정)
 - ◎ 안전관리요원 : ? 명 (유관부서(토목SQ팀)와 협의 후 결정)
 - (8) 【폭발물】
 "을"은 폭발물 사용시 이의 적절한 취급, 운반, 저장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2조 적용

현장설명서

마. 환경관리

- (1)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의 환경방침과 환경관리지침,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연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을"은 환경오염 발생자 책임 원칙에 의거 "을"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환경오염물을 "을"의 비용으로 제거 하여야 하며, "을"은 건설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환경관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을"의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일일작업 완료 후 "을"은 반드시 현장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 (4) 현장내에서 "을"은 장비 엔진오일 무단교체, 재료(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 오염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는 장비 및 인원은 현장에서 즉시 퇴출 조치하며, "을"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 (5) 소음, 분진 및 진동, 비산 먼지 및 산업폐기물 오염방지 등 "을"은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공사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환경과 관련한 민원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6) "갑"은 환경관리 목적으로 작업방법, 시간, 자재, 장비 등을 사전에 제한 할수 있다.
- (7) 수질오염
"을"은 공사 중 당국의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8) 대기오염
"을"은 공사 중 당국의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3조 적용
- (9) 화학물질
"을"은 공사 중 당국의 화학물질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화학물질로 주변 환경을 오염하거나 현장 주변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3조 적용

바. 품질관리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3조 적용

사. 기타사항

- (1) 타인과의 협조
"을"은 타공종의 협력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타 협력업체의 공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을"은 손실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변상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갑"이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서면통보후 기성금액 지불시 공제하여 해당업체에게 지불 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8조 적용
- (2) 공사용 동력 및 용수
공사 시행용 동력 및 용수는 "을"이 부담,시설하여 사용 하여야 하고, 기 개설된 "갑"의 시설을 이용할 시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3) 보안
공사의 시공중 기성부분,미기성부분 및 기타 현장내에서의 도난 및 보안 사항은 "을"이 책임진다.
- (4)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현장설명서

①	검측관리 (1) 검측은 1일전 공사담당자에게 검측요청서를 제출 후 실시한다. (2) 검측 시 검측사진 (해당 공사사진 포함)을 촬영하고 그 사진은 정리하여 기성신청 시 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검측에 필요한 도구(카메라, 줄자, 시공상황판 등)는 "을"이 준비한다. (4) 검측시에 부적합한 품질이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갑"의 공사담당자에 의한 재검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적합승인을 득한 후에야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검측에 필요한 측량은 "을"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제작 감리, 감독을 위하여 발주처, 감리단 혹은 "갑"의 인원이 공장을 방문할 시 "을"은 방문자의 업무수행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원이 공장내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공사사진은 "갑"이 요구하는 형식및 제출방식에 따르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 전경 2. 공사중 은폐 및 매몰부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부위 4. 주요 구조부 5. 준공사진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6. "갑"이 지시한 사항이나 부분
③	SHOP DRAWING "을"은 "갑"의 필요시 해당 공종 착수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필요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공계획 발표회 "을"은 작업착수 전 해당작업에 대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안전/시공 계획발표회를 "갑" 임회하에 "갑"의 요청일에 실시하며, "갑"의 승인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⑤	용어 및 단위 계약에 종속하는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용 도면, 기술 규격서는 별도 합의에 의해 영어를 전용 혹은 병기할 수 있으며, 단위는 미터(METER)법을 사용한다.
⑥	문서처리 및 통보 ① "을"은 "갑"의 문서수발 절차에 따라 모든 문서를 취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을 "갑"이외의 제3자에게 알릴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공시설 및 타인 재산의 보호 "을"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장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반 공공시설,도로, 기타 타인 재산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시설 등이 폐쇄되거나 손상을 받았을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안전조치 안내판 및 표지등을 설치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현장내 및 현장 부근의 모든 경작지, 산림지역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훼손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발생한 손해와 이의 보수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⑧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1) 제4,5조 적용
⑨	지장물 관련

현장설명서

"을"은 문화재발굴, 분묘이장, 지장 가옥철거 등 각종 지장물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훼손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발생한 손해와 이의 보수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지장물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특수조건

가. 공사구간 및 작업의 범위

- ① 황조마을 연도변조사 70개소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① 본 공사는 산출내역에 의한 하도급계약공사로 공사물량은 발주처에서 산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인정하지 아니한 수량 증감분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교부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반영가능하다.

- ② "을"은 견적대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규격변경, 수량증감, 신규항목에 대해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량 증감분 및 신규단가는 기계약단가를 기초로 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1적용

다. 견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계약공사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인허가, 각종임대료, 설치비, 유지관리, 뒷정리, 원상복구비, 교통 및 안전관리비

- ① 현장사무실(부지임대 및 인허가 비용 포함)

- ② 각종 작업장

- (2) 공사용동력, 용수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사용료

- (3) 수방대책 및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복구 및 원상회복비

- (4) 각종 측량비: 측량작업수행은 반드시 "을"에서 측량팀(측량 유경험자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함)을 운영하며, 성과품에는 측량자 및 작성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5) "을"이 공사중 "을"의 귀책으로 발생한 공사성 민원처리

- (7) 조사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 및 입주자 성향 파악, 평면 및 입면도 작성을 포함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업무협의를 포함하며, 조사 거부시 확인서를 받고 처리토록 한다.

- (8) 조사거부 확인서를 받은 대상물은 실공사물량이 아니므로 정산(감액) 대상이며, 조사시설물의 관리주체 협의시 발생하는 비용은 성과품 비용에 포함하여 견적한다.

- (9) 조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현황조사 1회, 사후현황조사 1회로 시행한다.

- (10) 계측기의 설치는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경사계 4개, 균열계 6개 설치 기준으로 견적하며, 초기조사 완료 후 "갑"과 협의된 건물에 설치한다.

- (11) 생활소음 측정 : 각 개소별 국가 공인 성적서 발행 제출, 각 개소별 1Point 당 2회 측정하여야 하며, 3층 이상 집합건물은 지상, 중간층, 최상층 총 3Point 실시한다.

- (12) 생활진동 측정 : 각 개소별 국가 공인 성적서 발행 제출, 각 개소별 1Point 당 2회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단위는 db(V)를 기준으로 한다.(KINE 측정 후 db(V)로 환산불가) 3층 이상 집합건물 등은 지상, 중간층, 최상층 총 3Point를 실시한다.

현장설명서

- (13) 건물 외관 손상 조사 및 도면화 작업 : 건축물 조사시 각 개소별 중요지점에 건물 경사계, 균열계이지 부착 후 초기치를 측정한다. 조사 후 CAD작업을 수행하여 건물별 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손상부분 및 집계표, 손상 사진현을 작성하여 반영한다.
- (14) 측정을 위해 설치한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관리부주의로 인해 계속 신뢰성 저하로 인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진다.
- (15) 측정 횟수 기준
1. 경사계, 균열계, 누수
: 각개소별 70개소 x 2회(사전1회+사후1회) = 총140회
 2. 생활진동/소음 측정
: 각 개소별 70개소 x 2회(1Point당 2회)=총140회
 3. 소음/진동 측정간격 : 오전 1회 + 오후 1회
- (16) 조사 실시 시기(갑의 요청시, 사전협의하여 조사일정 조정)
사전조사(공사시작전), 사후조사(공사 종료후 갑의 요청시)
- (17) 측정을 위해 설치한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는 공사 종료시 "갑"과 협의 후 철거 또는 "갑"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 (19) 성과품 : 보고서 5부(책자),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CD 1set, 동영상/사진 CD 1set
- (20) 성과품 제출시 보고서는 법무부에 공증하여 법적 대응력을 갖춘 후 최종 납품해야 하며 이에대한 비용은 성과품 비용에 포함하여 견적한다. (사전, 사후 각보고서 제출시 5부중 1부만 공증하여 제출)
- (21) 투찰시 1식당가에 대한 일위대가를 입찰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하며, 오기,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한다. 일위대가 산출내역에의해 실공사 물량으로 최종 정산한다.
- (22) 본 계약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은 일체를 금한다. 재하도급 사실 적발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3)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야 하고, 조종원은 해당 면허 소지자만을 당 현장에 투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 한다
- (24) 공사 수행도중 발생하는 각종폐기물 수집, 분류비 및 상차비
- (25) 공사중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및 현장정리비
- (24) 현장설명에서 언급된 모든 작업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 (25) "을"은 상기 (1)~(24)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갑"의 귀책이 없는 한 상기 항목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
- (1) "을"은 매월 기성부분에 대하여 도면,수량산출서,기성대비투자내역서(자재,장비,인건비,유류비 등)를 첨부한 기성청구서를 매월 "갑"이 정하는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성금액은 (매월 25일)까지 작업분 중 검측 후 합격한 수량에 한하며 현금 및 어음의 비율 및 기한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지급기준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갑"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3) "을"은 매월 거래처 LIST, 각서, 인건비 및 거래처별 대금지불(증빙사본 첨부) 현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을"의 귀책사유로 자재,장비,노임,유류비 등의 체불 및 지연으로 현장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갑"은 "을"이 청구한 기성금액 내에서 투입비율 직불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전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서

(5) 채권양도합의서 제출

"을"의 체불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수행 및 선량한 "을"의 노무자들과 거래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시 "갑"이 지정하는 양식의 채권양도합의서(별첨)를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체불사태 및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을"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양도합의서에 의거 채권양수인에게 대금을 직불 처리할 수 있다.

- "을"은 채권양도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갑"의 요구 시 채권양도에 필요한 "을"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 및 제반 업무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관기성 검사 및 각종 검사 시 "을"은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일일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뒷정리 및 청소를 실시한다.

(7) 매월 기성 청구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은 계약 금액 한도 내에서 첨부된 증빙에 한하여 "을"에게 기성 지급하고 미사용 금액은 정산시 감액한다. 단, 하도급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7,41조 적용

(8) "을"의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거래처(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서 미불, 체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경우, "갑"은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거래처가 직접지급 요청한 금액만큼 거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적용

(9) "을"이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에게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적용

현장설명서

마. 시공에 관한 사항

- (1) "갑"의 지시로 품질관리상 수반되는 재시공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 (2) 공사수행을 위한 모든 측량은 "을"의 비용으로 "을"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측량기술자를 필히 채용하여야 하고 측량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3)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도는 본공사 구간에서 타 협력업체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이므로 항상 유지관리 및 수해로부터 보호를 철저히 하고 통행 및 이용이 자유롭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직의 구성

- (1) "을"은 계약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전담 및 자격증 소지자)를 사전 승인 후 현장에 배치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조직표를 "갑"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는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4, 15조 적용
- (2) 승인된 "을"의 조직표상의 인원은 반드시 투입하며, 미투입시 당사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을"의 공과잡비에서 공제한다.(단, 투입시기는 공정에 따라 "갑"의 투입 요청일로 부터 적용한다)
- (3) "갑"은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응한다.
- (4) 첨부된 조직표 외에 추가 인원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하여, 하도 공구별 특성에 따라 보충하고 직급 및 경력사항은 "갑"의 요구에 따르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다.

사. "갑"의 지급자재

- (1) "갑"의 지급자재에 대하여 "을"은 자재인수확인서를 날인하고,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설계 내역서상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즉시 반입한다.
- (2) 지급자재에 대하여, "을"은 매월(현장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으나, 분기(3개월)를 초과할수는 없음)반입량 대비 소비량을 파악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산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7조 적용

자재	인수인계지점	비고
해당없음		

아. 지급자재의 할증

자재	할증(%)	비고
해당없음		

자. 기타사항

- (1) 계약금액 증감에 의한 잡비율은 당초대로 적용한다.
- (2)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갑"에게 선 보고한 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 (3) 해당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은 적법하게 처리하며 이에 대한 제반 민원 사항의 비용 및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해결한다.
- (4) "을"의 귀책사유, 고의 및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은 "을"에서 수행한다.

현장설명서

(5) 당사에서는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이에 대한 유의사항 및 입찰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검토 확인서 제출양식 (첨부양식 참조)

차 례

- 1)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1부.
- 2) 내역서 1부.
- 3) 도 면 1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변경)

-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수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외의 미숙지, 일일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조 (추가공사)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사전에 부속합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중역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중역 지급한다.

제4조 (추가공사 추정)

-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송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④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약실금)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6조 (원사업자 협조)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7조 (공사시공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에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 ③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8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원사업자는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보증 등)

-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채권권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촉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 ⑪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⑫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감독원)

-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임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임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임회하는 일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임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 (현장대리인)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 15조 (종업원 등)

-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6조 (자재검사)

-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 ⑧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자재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 17조 (지급자재 등)

-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지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속하여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니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 ⑦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⑧ 원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그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원품 반환을 조건으로 자재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감독원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임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 ⑩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⑪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제 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부적합한 공사)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적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조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 목적물의 원형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등을 확정한다.
-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⑧ 제7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율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2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총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조 (응급조치)

-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검사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때에는 목적물을 검사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은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임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5조 (손해부담)

- 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원사업자의 인수지연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린다.
- ④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부분사용)

-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 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물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 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율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 ⑦ 제4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6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8조 (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적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0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공사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공사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한다.
- 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위탁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매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31조 (보복조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주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우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3조 (선금금)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이 계약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금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선금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⑦ 선금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금 정산액 = 선금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⑧ 수급사업자는 선금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금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시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동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금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금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하자담보책임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체상금 등)

-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중, 흉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확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할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37조 (공사중지)

-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제36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8조 (계약해제·해지)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을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지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력·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7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7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39조 【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일괄,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함조한다.

제40조 【보험가입 등】

-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책임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1조 【안전관리비】

-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시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제42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43조 (분쟁해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수급사업자 안전의무)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6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5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0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료 제공,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 (손해배상)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률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I)

제 1 조 (목적)

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외에 원할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안전관리)

- ①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 상주시키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장에 있어서는 안전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의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안전시설 및 보호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완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안전에 관한 원사업자의 제반 규정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안전관리절차서를 적용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손상 시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⑥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액에 달할 때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수급사업자가 공사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본 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3 조 (환경 및 품질관리)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녹색경영방침(별표 1)과 녹색경영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품질방침(별표 2) 및 현장 품질시스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품질관리활동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ISO 9001 품질요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주요 품질관리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ISO 9001 품질요건에 따른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원사업자의 품질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i) 품질시스템 교육 : 2~4시간/년 (현장소장 및 직원)
 - ii) 품질홍보교육 : 1회/공사기간 (현장소장 및 직원)
 - iii) 공종별 품질관리교육 : 수시 (현장소장, 직원 및 근로자)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및 수급사업자가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자재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i) 사전승인 대상자재는 자재공급원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득함
(수급사업자가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자재에 한함)
 - ii) 자재인수검사 수행, 저장 및 보관
 4.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검사계획서에 명시된 작업단계마다 해당작업을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 부적합 보고서,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 폐기, 수리 및 재작업을 적기에 준수하여야 한다.
 7. 원사업자가 수립한 현장 품질시스템에 의거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품질경영을 점검하며,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8. 특수공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자격 확보
 9.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종별 작업절차서, 시공계획서 및 Shop Draw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용보험)

- 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관련법률에 의거 원사업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협조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이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대상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법정요율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수급사업자가 보험가입자 승인(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보험가입자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공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수급사업자의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수급사업자의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천 징수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해당월의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해당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 ⑤ 수급사업자가 고용보험 관련법률 및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① 이 계약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건설공사관련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일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협조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대상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일정요율의 퇴직공제부금비를 하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 수급사업자가 가입자 승인(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본 계약 공사의 준공 시 하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가입자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퇴직공제부금비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공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해당 퇴직공제부금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수급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조물책임)

- ① 수급사업자는 자체 또는 외주로 공급받아 본 계약에 의한 공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 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 및 계약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제품사용 시 필요한 설명, 지시, 주의, 경고 등의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는 별도로 계약물품의 공급 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노임,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우선변제 의무)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할 경우, 당해 기성금의 내역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등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노임채불 등 전항의 각 채무에 대한 변제의 지체는 원사업자의 원도급공사 이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원도급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손해 발생의 요인이 됨을 인지하고, 제1항의 우선변제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10일까지 전월말의 거래처 대금지불 현황을 그 세부내역과 관련증빙서류(원사업자가 필요 시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2 (노임에 대한 대위)

-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노임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법적 하자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월 또는 익월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 수급사업자의 해당근로자에 대한 체불 노임을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각 체불금에 대한 체불사실과 이 체불금에 대한 대위변제함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후 14일 이내 수급사업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채권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각 체불금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과 변제액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직접지급)

- ① 수급사업자가 제7조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부품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이하 장비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항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에게 장비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과 제작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장비비 등의 금액을 확정된 후 제작납품업자에게 직접지급의 의사와 금액을 통보하며 15일 이내 제작납품업자의 직접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작납품업자에게 장비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③ 원사업자가 장비비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채권의 상계는 제7조의 2의 2항의 후단을 준용한다.

제 8 조 (부도시의 체불금의 대위변제)

- ①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이 계약이 해제·해지 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법적 하자 없는 기성금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노임채무와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등 이 계약공사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기성금 청구채권은 원사업자가 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갖게 된 수급사업자에 대한 구상채권과 변제액 범위내에서 상계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이행을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대위변제 및 채권상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 9 조 (인지세)

-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선부담 후 원사업자로부터 인지세 금액의 50%를 정산 받는 방식으로 균등하게 연대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전자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산세 처벌 시 수급사업자는 가산세 전액 부담 및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미납부
 2. 인지세 과소납부
 3. 소인(消印)된 인지 재사용
 4.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된 경우

제 10 조 (비밀유지의무)

수급사업자는 본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규정 및 정부공사보안관리기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획득한 각종 공사관련 정보나 공사관련 비밀사항을 본 공사 시공 중에는 물론 계약완료(정산) 또는 계약의 종료해지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윤리경영)

- ① 수급사업자는 윤리경영 구현을 위한 부정당행위의 금지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당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공사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을 하거나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원사업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수급사업자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거나 또는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는 등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3. 설계변경·정산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정산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원사업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의 부정당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사업자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고, 위반여부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사업자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제3의 기관(감찰, 법원 등)에 의하여 적법행위로 판명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보상조치(적법행위 판명 이후)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자는 동 보상조치 이외에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배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1. 경고 : 부정당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안이 미미한 경우 경고를 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제한처분 : 원사업자에서 발주하는 입찰 등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해당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 i)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ii)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iii)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록취소 : 부정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③ 윤리경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부정당행위의 금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수급사업자는 본 조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자료 및 경영정보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조사결과 수급사업자의 위배사항 발견 시 원사업자는 동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원사업자의 관련 부서 및 창구들 통하여 본 조의 이행과 관련된 제보 및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 i) 관련부서 ▶ 감사실 (전화 : 02-2011-7210 ~ 7211 / Fax : 02-2011-6019)
 - ii) 제보창구 ▶ 대림산업홈페이지(www.daelim.co.kr) 또는 어깨동무(<http://partner.daelim.co.kr>)의 [사이버 신문고]
 3.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4. 수급사업자는 본건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서도 원사업자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계약이행 준수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 12 조 (일반계약조건 적용 시의 특례)

- 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①항과 ③항에 규정된 목적물 인도의 범위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윤리적으로 완전히 종료하여 목적물이 수급사업자의 물리적, 법률적 관리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 ②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5조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공사의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수급사업자가 실패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기업에 대한 일반계약조건 적용제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계약규정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12조 1항과 3항, 제37조, 제22조 1항, 제24조 1항과 2항, 제27조, 제33조 2항, 제40조 4항은 별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II)에 특수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 특수조건(II)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들을 적용한다.

안전보건 · 환경방침

대림산업은 1939년 창업 이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건설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공간의 GREEN化" 라는 그린대림 비전을 달성하고, 안전보건 · 환경경영체제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 환경 방침을 천명한다.

- ◆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HUMANISM" 추구
- ◆ 국내 및 관련국가의 안전보건 · 환경 관련 법규 준수 및 이해 관계자의 견해 능동적 수용
- ◆ 안전보건 · 환경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 ◆ 전 임직원 및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 환경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제반활동 적극참여 유도
- ◆ 최적의 안전보건 · 환경경영을 위한 기술 개발

이 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안전보건 ·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이행상태에 대한 주기적 감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 환경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014년 3월 21일
대 립 산 업(주)
대표이사 사장 김동수

품 질 방 침

대림산업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품질방침을 경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 ◆ 지속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 ◆ 최고의 기술력 확보로 기업가치 제고
- ◆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품질경영
- ◆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 ◆ 협력업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최고의 품질 확보

이러한 품질방침의 달성을 위해 각 단위 조직별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품질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된 품질경영매뉴얼의 실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대림산업의 전 임직원은 본 품질방침을 숙지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14년 3월 21일
대 립 산 업(주)
대표이사 사장 김동수